

# 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제정 1996. 3. 9.

(중간 생략)

개정 2013. 5. 21.

개정 2015. 3. 1.

개정 2015. 8. 27.

개정 2016. 2. 4.

##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초·중등교육법 및 동법시행령에 의하여 전북기계공업고등학교(이하 ‘본교’)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본 위원회는 “전북기계공업고등학교 운영위원회”라 칭한다.

제3조(사무소) 본 위원회의 사무소는 본교에 둔다.

## 제 2 장 운영위원회의 구성

제4조(위원의 정수) 위원 정수는 11명으로 하며 학부모위원 4명, 학교장을 포함한 교원위원 3명, 지역위원 4명으로 구성한다. 단, 위원정수는 당해연도 3월 1일 학생수를 기준으로 한다.

제5조(위원 선출) ①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은 임기만료일 10일 이전에 선출하고 지역위원은 임기 만료일 전까지 선출한다.

② 학교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③ 학부모위원은 민주적 대의절차에 따라 학부모 전체회의를 통하여 학부모 중에서 투표로 선출한다. 이 경우 학부모 전체회의에 직접 참석할 수 없는 학부모는 학부모 전체회의 개최 전까지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우편 등을 통해 후보자에게 투표할 수 있으며, 방법 및 절차는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④ 교원위원은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직접투표로 선출한다.

⑤ 지역위원은 학부모 위원과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은 동문회 대표, 지역 사회의 덕망인 기업인 중에서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이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되, 1/2 이상은 관내 지역을 사업활동의 근거지로 하는 사업자로 선출하여야 한다. 단, 중소벤처기업부 국립 공업고등학교 담당은 당연직으로 한다.

제6조(선출관리위원회 구성) ①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의 선출을 관리하기 위하여 선출 관리 위원회를 구성한다.

② 선출관리위원회는 후보자의 등록, 선거홍보, 투·개표, 당선자 공고 등의 사무를 관장 하며 구성 시부터 위원선출이 종료될 때까지 운영된다.

③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학부모위원에 입후보하지 않은 학부모 6명으로 하되, 학부모의 추천으로 학교장이 위촉하여 구성하고, 그 위원장은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에서 호선하여 선출하며 선거사무를 총괄한다.

④ 교원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교원위원에 입후보하지 않은 교원 4명으로 하되,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추천을 받아 학교장이 위촉하여 구성하고, 그 위원장은 교원위원 선출 관리위원회에서 호선하여 선출한다.

⑤ 선출관리위원회에는 간사를 두되 교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제7조(위원의 선출절차) ① (공고) 선출관리위원회는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 선거시 선 거일 10일 이전까지 위원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

② (입후보자 등록) 입후보자는 선거공고에 명시된 일시까지 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하며 교원위원의 경우 본교 교직원 10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③ (선거홍보)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 전 후보자의 신상에 관한 사항, 후보자의 출마 소견서 등 선거 홍보물을 작성하여 전체 유권자에게 홍보하되, 선거당일 선거에 앞서 후보자의 소견발표 기회를 부여한다.

④ (투표) 학부모위원 선출은 선거 당일에 후보자의 소견 발표를 들은 후 투표한다. 단 가정통신문에 의한 회신 또는 우편 등을 통한 투표는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에서 정한 일시까지 회수된 투표용지만을 유효한 것으로 한다.

⑤ (당선자 결정) 당선자는 다수 득표자 순으로 결정하고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연장 자를 당선자로 결정한다. 단, 입후보자가 정수와 같을 때에는 무투표 당선으로 한다.

제8조(위원의 자격) ① 학부모위원은 본교에 재학중인 학생의 학부모로 한다.

② 교원위원은 본교에 재직중인 교원으로 한다.

③ 위원은 다른 학교의 위원을 겸할 수 없다. 다만 당연직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로 하며, 해당시 당연 퇴직한다.

제9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② 위원은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1차 연임 후에는 1기(2년)이상 쉬어야 위원이 될 수 있다.
- ③ 임기 중 위원이 결원 된 때에는 보궐 선출하고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단, 잔여임기가 6개월 미만으로써 위원 정수의 1/4 이상이 결원 되지 아니한 때에는 위원회의 결정으로 선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④ 위원의 임기 개시일은 선출년도 4월1일로 한다.

제10조(위원의 의무) ① 위원은 무보수 봉사직으로 일체의 비용은 지급하지 않는다.

- ② 위원은 본 위원회 회의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하며, 이를 통하지 않고는 학교 운영에 관여할 수 없다.
- ③ 위원은 본교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하거나 그 직위를 남용하여 재산상의 권리, 이익을 취득 또는 알선을 할 수 없다.
- ④ 교원위원은 사전 통지된 안건에 대하여 가능한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의견을 수렴하여 회의에 참여하여야 하며, 위원회의 결정사항을 교직원 전체회의에 보고한다.

제11조(위원의 퇴직) 위원이 다음 각 항에 해당될 때에는 자격을 상실한다.

- ① 학부모위원은 학생의 졸업과 전학, 교원위원은 교원의 전보발령으로 자격을 상실할 경우 당연 퇴직한다. 단, 학생 졸업의 경우 2월말까지 자격을 유지한다.
- ② 위원은 특별한 사유 없이 3회 연속 회의에 불참한 때에는 당연 퇴직한다. 단, 다음 사항은 3회 불참에서 예외로 한다.
  - 1. 병으로 인하여 거동이 어려울 때.
  - 2. 가족의 경조사로 인하여 참석이 어려울 때.
  - 3. 공무나 생업과 관련하여 장기 여행 중일 때.
  - 4. 기타 위원회가 특별히 부득이 하다고 인정하였을 때.
- ③ 학부모위원 및 지역위원이 선출과정시 제출한 신장자료, 학력, 경력 등의 주요 내용에 허위 사실이 있는 것이 발견되거나, 제10조 제3항을 위반시 허위 및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리가 완료된 때 당연퇴직 된다.
- ④ 사직하고자 하는 위원이 사직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면 위원장이 사직 처리한 후 학교운영위원회에 알린다.

제12조(위원장, 부위원장의 선출 및 임기) ① 본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둔다.

-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교원위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단, 보궐선거에 의해 선

출된 경우,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무기명투표로 선출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다만,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하여 최고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이 경우 최고 득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 ⑤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 ⑥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장기 출타 및 부재시 학교장 또는 연장자가 운영위원회를 소집하고, 참석자 중 최연장자의 주재로 임시위원장을 선출하여 안건을 심의할 수 있다.

제13조(위원장, 부위원장의 권한) ① 위원장은 본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며 위원회 사무를 감독한다.

-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의 유고시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소위원회) ① 학교운영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본 위원 회의 결의에 의해 한시적으로 소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다만, 교복소위원회와 급식소위원회는 반드시 설치한다.

- ② 소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회의운영규칙으로 소위원회에서 정한다.

제15조(사무처리 부서) 운영위원회의 회의기록 등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총무부장을 간사로 두며, 학사활동과 관련된 사무에 대해서는 교무부가 협조한다.

### 제 3 장 학교운영위원회의 기능

제16조(학교운영에 관한 주요사항 심의) ① 학교장은 본 위원회의 결정 사항을 존중하여 학교운영에 반영하도록 노력하며 다음사항은 본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시행한다.

1. 학교헌장과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
2. 학교의 예산안과 결산
3. 학교교육과정의 운영방법
4. 교과용 도서와 교육 자료의 선정
5.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 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
6. 교육공무원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초빙교사의 추천과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3제8항에 따른 공모 교장의 공모 방법, 임용, 평가 등
7. 학교운영지원비와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사용
8. 학교 급식
9. 대학입학 전형 중 학교장 추천

## 10. 학교 운동부의 구성·운영

### 11. 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 사항

### 12. 학생 지도를 위한 지원사항

13. 교복·체육복·졸업앨범·현장체험학습 등 학부모 경비 부담 사항. 단, 동아리 등에서 특정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항은 제외

### 14. 지역사회 교육에 관한 사항

### 15. 학부모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 16. 기타 학교운영에 관하여 학교장이 심의 요청한 사항

② 학교장은 본 위원회의 심의사항이 법령, 조례, 규칙에 위배되거나 이를 이행하기 어려운 사유가 발생 시는 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그 사유를 첨부하여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③ 학교운영상 긴급하게 필요한 사항으로 위원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이를 시행한 후 이에 관한 사항을 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1항 제11호의 학교운영 등과 관련된 건의사항은 위원 1인 이상의 소개를 얻어 건의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그 절차 등에 관해서는 규정으로 정한다.

⑤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을 심의할 때에는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 심의하여야 한다.

#### 1. 학교홈페이지

#### 2. 학부모 총회

#### 3. 가정통신문

#### 4. 그 밖에 위원회에서 의결로 정한 방법

⑥ 학생대표가 학생의 학교생활과 관련된 사항을 운영위원회에 건의할 경우 학생대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건의하여야 한다.

#### 1. 학생 설문조사

#### 2. 대의원회

#### 3. 그 밖에 위원회에서 의결로 정한 방법

제16조의1(위원의 제척 등) ① 운영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운영위원회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운영위원회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인 경우

3. 운영위원회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중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운영위원회 위원이나 운영위원회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운영위원회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에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고, 운영위원회는 의결로 해당 운영위원회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운영위원회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③ 운영위원회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17조(학교운영지원비 및 학교 발전기금 등의 모금 및 관리) ① 본위원회는 학교장과 사전 협의하여 학부모로부터 일정액의 학교운영지원비를 받아 학교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② 학교운영지원비의 모금액, 사용처 등은 본 위원회에서 결정하되, 일률적으로 일정액을 각출하도록 하고, 교직원 복지 향상을 위한 수당 지급액은 전라북도교육감이 정한 범위를 준용한다.

③ 학교장과 사전 협의하여 학부모 이외의 인사로부터 기부금을 모금하여 학교발전기금을 조성할 수 있으며 학교발전기금은 “학교발전기금조성·운용 및 회계관리에 관한규칙”에 따라 조성·운용하여야 한다.

④ 본 위원회가 학교운영지원비와 학교발전기금에 관한 결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학교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⑤ 학교운영비와 기금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운용 결과를 공개한다.

⑥ 회계업무는 학교장에게 위탁하여 관리하며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경리한다.

## 제 4 장 학교운영위원회의 운영

제18조(회기 및 회의소집) ① 회기는 매년 4월 1일부터 익년 3월 31까지로 한다.

② 본 위원회의 소집은 학교장의 요청 또는 재적위원 1/3 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위원장이 회의 개최 7일 전에 소집공고와 함께 회의안건을 첨부하여 위원에게 개별 통지한다. 단, 위원장이 선출되지 않은 경우에는 학교장이 소집한다.

③ 정기회는 회기 개시 후 15일 이내에 소집하고 임시회는 안건이 있을 때 수시로 소집하되, 연간 4회 이상 개최하고 회의일수는 연 30일 이내로 한다.

제19조(안건의 발의 및 처리) ① 안건은 학교장 또는 재적위원 1/3 이상의 연서로 제출하거나 발의한다.

② 안건 처리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0조(회의운영) ① 학교장이 발의한 안건을 처리할 때에는 학교장은 교직원 중 관계자를 위원회에 참석시켜 이를 설명하고 질의에 답변하게 할 수 있다.

②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한 사항은 전문가를 초청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학생들과 직접 관련이 있는 사항은 학생 대표를 통하여 의견을 청취 할 수 있다.

③ 위원회 회의는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학생 교육 또는 교권의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가정통신문, 학교게시판 등을 통하여 회의 개최 일자, 안건 등을 알림으로써 일반 학부모, 교사, 지역주민 등이 회의에 참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그 의결로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당해 학교장에 대하여 요구할 수 있다

⑥ (삭제)

⑦ 회기 종료 시에는 본 위원회의 활동상황 보고서를 작성하여 학부모 및 관할청 등에 배포해야 하며 차기 위원회의 정기 회의시 보고한다.

제20조의1(회의록 작성 등) ① 운영위원회는 회의 일시, 장소, 참석자, 안건, 발언요지, 결정사항 등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진행 내용 및 결과와 출석위원의 성명을 기재한 후 학교장과 위원장이 서명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작성한 회의록은 학교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1. 회의록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2. 공개될 경우 운영위원회 심의의 공정성을 크게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3. 학생 교육 또는 교권 보호를 위하여 공개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1조(건의사항 처리) ① 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제1조 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 건의를 하고 하는 자는 위원 1인 이상의 소개를 얻어 건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건의서를 접수한 때에는 이를 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한다.

③ 건의서를 소개한 위원은 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건의의 취지를 설명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건의인의 직접진술을 들을 수 있다.

- ⑤ 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채택된 건의 중 학교장의 권한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학교장에게 이송하고 학교장은 그 처리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⑥ 위원장은 건의의 처리 결과를 건의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2조(기타 사항) ① 본 위원회는 학부모 등으로 구성되는 교내외 봉사 활동 및 학생지도 조직을 산하단체로 둘 수 있다.

- ② 본 위원회의 운영 경비는 학교운영지원비에서 충당한다.

## 제 5 장 규정의 개정

제23조(개정의 제안) 위원회 규정의 개정은 재적위원 1/3 또는 학교장의 발의로 제안된다.

제24조(공고) 제안된 학교운영위원회 규정의 개정안은 위원장이 7일 이상의 기간 동안 이를 공고 하여야 한다.

제25조(규정의 개정) 위원회 규정의 개정은 재적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하고 위원장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 부 칙

제1조 이 규정은 확정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이 규정에 불구하고 1996학년도 학교운영지원비 본 예산은 육성회 이사회 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 부 칙

이 규정은 1998년 5월 6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이 규정은 2000년 6월 2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이 규정은 2003년 10월 1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이 규정은 2007년 10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3년 5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5년 8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6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